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48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추가와 그에 따른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정수 확대와 임기 정비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미래교육재단으로의 재단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나.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
- 다. 재단 확대에 따른 임원 정수 확대 및 당연직 이사 추가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라. 임원의 임기 일원화에 따른 정비(안 제8조제6항)
- 마. 사무국 명칭 변경(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3. 30.~ 2023. 4. 19.)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목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목적 명확화를 위해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현재의 재단명칭인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
- 안 제5조(사업)는 미래교육재단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으로서 현 조례상 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지역인재양성”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 안 제8조(임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를 현행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이사에 구청장을 신설함. 또한, 타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장의 임기를 현행의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안 제9조(운영기관)**는 현 조례에서 장학재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두고 있는 “사무국”을 “운영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현재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사무국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래교육 재단은 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될 예정임을 반영하여 사무처리기구 명칭을 변경한 것임.
- **부칙 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함.

##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22.10.1.~ ’23.1.31.)결과<sup>1)</sup>를 토대로 주요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추가 및 이에 따른 재단 명칭 변경, 임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음.

변경 승인 받은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법」에 따라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의 우수인재 발굴 및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1)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신규법인 설립을 최소화하고 이전 장학재단과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정책사업의 공공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다각적 국비사업 유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력 및 조직운영 등에 따라 교육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영등포구장학재단을 영등포미래교육재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법인 설립이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기반으로 한 정관변경, 임원 임명 및 설립등기, 지정고시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재단출범 절차가 완료됨.

다만, 조례개정에 앞서 구의회 포함, 교육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 후 진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단 설립에 따른 신규재원 투입 규모를 감안하여 재원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

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49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26조)
- 나. 정의규정에서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수강료 규정 삭제(안 제3조)
- 다. 도서관의 기능과 관련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라. 대표도서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6조)
- 마.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조문 내용 정비(안 제8조)
- 바. 위탁계약의 철회 관련 단서조항 신설(안 제10조)
- 사. 질병으로 인한 위원의 해촉 요건 구체화 및 품위손상으로 인한  
해촉 사유 신설(안 제15조)

- 아. 도서관 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 신설(안 제16조)
-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안 제20조)
- 차. 변상책임과 관련한 내용 구체화(안 제21조)
- 카. 폐기·제적 자료에 대한 무상배포 규정 신설(안 제26조)
- 타. 복사·인쇄 수수료 요금 현실화(안 별표1)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안 동의(안 제12조제3항에 반영)
  - 4)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3. 30.~ 4. 19.)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정의) 및 안 제2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는 상위법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한 것이며,
- 안 제3조(정의)는 회원증 발급 수수료와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가 없어짐에 따라 정의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 안 제4조(기능)는 「도서관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제4호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기능에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 대차<sup>1)</sup>”를 추가함.
- 안 제6조(대표도서관의 지정)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대표 도서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도서관 시책수립 및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표도서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7조(조직 및 인력)는 관장의 임명 자격과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
- 안 제8조(수탁자의 선정)는 수탁자 선정 시 예외규정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영등포구가 설립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 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함.

---

1) 자료의 상호대차: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뜻함.

- **안 제10조(위탁의 철회)**는 위탁계약의 철회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철회 예정 90일 전 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상호협약이 된 경우에는 서면통지 기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9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도 서면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익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서도 본 조항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운영위원회 기능)**는 자료의 제적·폐기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선정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 제15조(위원의 해촉)**는 질병으로 인한 위원의 해촉 시 “6개월 이상의 질병”으로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함.
- **안 제1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자료 열람 및 대출 시에도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서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신설함.
- **안 제20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서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책을 강구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안 제2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는 폐기·제적되는 자료를 기관·시설·단체·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시행. 2022.12.8.)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및 보완하고 있음.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 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

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0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변경하고  
작은도서관 기능 추가 및 등록·변경·폐관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 기능 추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5조)

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폐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라. 운영인력 교육 규정 정비(안 제9조)

마. 폐기·제적 자료에 대해 무상배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안 제1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3. 30.~ 2023. 4. 19.)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 2022.12.8.) 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7조(설립 및 위탁)는 상위법령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 안 제5조(기능)는 「도서관법」 제32조제4호에 근거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에 “상호대차서비스<sup>1)</sup>” 및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가함.
- 안 제7조의2(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는 작은도서관의 등록·변경등록·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항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또한 「도서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1)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뜻함.

신설함. 이는 도서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9조(운영인력)는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운영인력에 대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함.
- 안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 등으로 인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에 대해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 제15조(독서진흥)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 2022.12.8.)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도서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 있음.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 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